[워크샵6] 감염병 확진자 정보공개의 명과 암- COVID19 사태의 정보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사회자 손재원: 안녕하세요? 워크숍 6 감염병 확진자 정보공개의 명과 암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KIGYS Youth 대표로 활동 중인 손재원이라고 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참석자 분들이 지금 다 발언권이 없이 음소거가 되어 있는 상태여서 혹시 질문 하실 사항이 있으면 줌 아래 Q&A 창을 통해서 쟁점이 다 끝난 후에 질의응답 시간에 패널 분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션은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이후에 확진자 동선과 그 정보공개로 인해서 투명하다는 외신의 찬사를 받기도 하였으나 인권문제에 대한 비판이 나오기도 한 것에 대해서 현재 공 개 범위가 어떤 인권침해를 일으키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들어 보고자 하는 측면에서 시 작되었습니다.

이에 이지원 님은 정보보호학 전공자로 현재 KIGYS Youth 그룹에서 활동 중이시며 이번 워크숍 제안자 중 한 분이신데요.

제안자적인 입장에서 현재 공개 범위가 어떤 인권침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가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지원: 안녕하세요? 이번 세션 제안자이자 한국인터넷거버넌스 KIGYS Youth 협회 소속이지원이라고 합니다. 우선 현재 저희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정보공개 범위부터 저희가 말을 하고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범위를 말씀드리면요.

이제 확진자에 관해서 코로나19 증상 발생 이전부터 격리일, 정보, 수단 등, 거주지 정보,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 방침인데요.

이러한 정보공개, 불필요한 남의 개인정보까지 알게 된다는 점이 과잉정보 노출이라고 불쾌 감을 드러내는 점도 있고 인권만 생각해서 정보를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방역을 하겠느냐 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방역만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한 것이겠지만 이 정보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확진자를 대상으로 악플, 신상털기 등 사이버불링을 일삼는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고생각해요.

이를 실제로 제가 체감했던 것은 저는 이태원 확진자와 같은 시, 다른 구에 거주하고 있어 요.

그런데 구체적인 세부정보가 공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카페, 커뮤니티 등에서 추측으로 확진자의 이름, 실제 거주지, 가족관계, 직업, 평소의 행실까지 TMI, 정말 불필요 하고 제가 불편해질 정도로 구체적인 정보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정보가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당사자를 제외하고 그 누구도 알 수 없겠지만 인터 넷에서 개인의 사생활이 거론되는 것은 누구에게나 불쾌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해당 환자가 다시 일상생활을 시작했을 때 겪게 될 수 있는 인권 문제 혹은 불편함은 예상을 할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당장의 정보를 공개하는 범위를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코로나 종식을 바라봐야 하는 시점에서 확진자 인권을 위한 후속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관련해서 다른 패널 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손재원: 감사합니다. 이에 대해서 정보인권의제 생산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하시는 희우 님께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우: 들리실까요?

한국 정보는 현재 방역을 K-방역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검사, 역학추적, 검사로 이어지는데 이것은 감염병 환자에 대한 접촉자를 파악하고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게 돌아가려면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강정보나 위치정보 등 사람의 개인적인 정보가 수집되는 것을 전제로 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침해 논란이 야기되는 것이고요.

물론 공중보건 위법 사항이 생기면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하게 권리도 제한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최소한 법에 근거해야 하고 공공보건 목적에 정확히 비례하는 수준으로만 침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정해서 기간이 한정되어야 하고 위기상황 대응에 필요한 만큼만 지속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침해를 최소화하는 생각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인권단체들 여러 곳에서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정부가 지켜야 할 인권원칙이라고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 K-방역 모델 앞서 말씀드렸는데 여러 단계로 이루어지는 방역에서 각각의 문제점이 조금씩 발생하는 것이어서 이것을 단계별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일단 역학조사 부분인데요.

역학조사는 지금 역학조사 시스템에 의해서 추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역학조사관이 확진자에 대한 인터뷰를 통하고 신용카드 정보나 CCTV 정보 등을 취합해서 그 사람의 동선이 정말 맞는지 검증하는 그런 일을 진행 했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이라고 해서 자동화하는 시스템 이 만들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질본을 지원하는 경찰청, 여신금융협회, 통신사 3개 전부, 그리고 22개 신용카드사 등 28개 기관이 연계되어 있는 자동화된 시스템입니다. 이것을 보면 지금까지는 역학조사관이 하나씩 하나씩 신청해서 신용카드 결제정보를 받아보고 CCTV를 확인했다면 이것을 통하면 신청만 하면 금방 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언론에서 표현하는 것을 보면 10분 만에 동선 추적이 다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이동통신사를 통한 위치정보도 받고 결제 정보도 한꺼번에 다 취합할 수 있는 시스템 이고 정부는 이 시스템을 조금 더 고도화할 계획까지 발표한 상태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더 고도화를 한다면 해외 출입국관리기록이나 의료기관이용내역 데이터도 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과도 연계될 수 있다고 밝힌 상태고 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신용카드 사용내역이나 위치정보, 이동경로, 그리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개인의 사적 취향이나 사회적 관계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수집된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이게 실제 수집되는 정보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는 사실 역학조사관의 개인적인 판단에 달려 있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이야기할 때 이것을 못 믿겠다, 보강하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다 다시 끌어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은 이러한 개인정보 수집이 자의적인 것에 맡겨질 뿐이지 통제하는 수단이 없다는 것에 문제제기를 하고 싶어요.

수사기관조차 범죄의 목적으로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려면 법원에 영장을 제출하고 허가받는 과정이 있는데요.

감염병 예방이나 이런 데에서는 수집이나 활용에 대해서 감독하고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아무런 절차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되게 범위가 무한히 확대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감염병 예방법에 이런 수집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는 합니다.

마련되어 있기는 한데 이게 사실 역학조사에 대한 근거라고는 볼 수 있는데 역학조사 시스템을 가동하는 법적 근거가 되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따져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동법 규정에 따르면 감염병 환자뿐만 아니라 감염병 의심자의 개인정보 또한 수집하도록 허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접촉자 분들의 동선이 어느 정도 수집되고 있는 건데, 이게 감염병 의심자라는 개념은 제2조 1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이게 어떤 기준인지 이것 역시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수집범위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개인정보 수집 대상이 무한정 확대될 수 있겠다고 생각되던 지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태원에서 발생한 기지국 정보인데 이게 2018년에 이미 기지국 정보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편의와 효율성만을 도모하면서 수사기관 제공 요청을 남용할 수 있는 통제나 감독 수단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정이 내려졌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감염병 예방을 이유로 한 기지국 접속기록도 법원의 허용 없이 남용 되는 상태고요.

이게 사실 국제사회에서도 이야기가 많습니다.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통해서 어디에 위치하고 존재했다는 것을 판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범위가 되게 넓기 때문에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감염자나 접촉자가 어느 정도 근접해 있는지 거리파악도 중요한데 이렇게 넓은 동선을 파악해서 알아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오히려 프라이버시는 침해하면서 추적성은 떨어지는 비난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외국에서도 휴대전화 관련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러려면 원칙적으로 익명화되어 있거나 개인의 동의를 받아서 사용해야 한다고 유럽연합, 개인정보 위에서 이야기한 바가 있고요.

한국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 휴대전화위치정보를 다 걷은 다음에 그것을 각자 확인하 기 위해서 신용카드 결제정보나 CCTV 등 세부적인 정보를 또 활용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휴대전화 정보를 가지고 가는 게 정말 효과가 있는가.

최고에 보시면 용산에서 단순히 직장만 다니고 있는 분한테 진단검사 받으라고 문자가 온다든지 식으로 너무 부정확한 정보를 남용하는 상태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지금 수집한 개인정보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도 여전히 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72조 2항 6항을 보면 업무종료 시 개인정보를 받은 기관은 다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집한 주체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것을 파기할 의무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제대로 나와 있지 않아요.

제공받은 기관은 파기해야 하지만 수집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갖고 있어도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 상태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파기할 수 있는 정보들도 사실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선파악을 위해서 수집했던 신용카드 이용 내역이나 교통카드 이용 내역, CCTV 정보는 동 선파악이 끝났다면 삭제해도 무방하겠죠.

그리고 역학조사 시스템에서도 삭제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

동선 접촉자 동선도 모아놓은 것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상관없는 거고.

정부는 코로나 사태 관련한 정보를 코로나 종료된 즉시 파기하겠다고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한 것에 따르면 메르스 정보도 파기하지 않고 갖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각 부처에서 말이 달라서 이것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서 갖고 있어도 되는 정보라고 밝히는 부처도 있었고 해서 서로 말이 다르고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이 가장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감염병 연구를 하기 위해서 개인정보가 필요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 식별정보를 제거하고 어떻게 하겠다든지 어느 부분만 일정 보관하고 이후에 파기하겠다든지 제대로 된 규정이 성립되어야만 국민이 안심하고 개인정보를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동선공개 규정 같은 경우에 지금 그리고 동선공개 관련해서도 이게 너무 대응이 기준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로 동선공개가 너무 많이 이루어졌어요.

심지어 각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동선공개를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해석이 달랐죠.

아까 제안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주지 아파트 이름이나 직장명, 성별, 연령대, 국적 등 많았고, 그래서 국가인권위에서 이에 대해 우려가 되어서 세부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라고 성명도 낸 적이 있고.

관련해서 경기도 공공의료지원단 등에서 밝힌 바가 있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가장 두려운 게 뭐냐 했을 때 완치되고 재감염 될 것에 대한 두려움, 완치되지도 못하겠다.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보다 더 높게 나타난 게 주변으로부터 받을 비난이나 피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확진자, 그리고 또는 전파자로서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공 포가 훨씬 더 컸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은 오히려 잘못 처신한 일부 사례로 인해서 확진자, 접촉자 전체가 비난받을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동선 공개에 대해서도 명확히 관리를 해야 한다고 누차 지적을 했고 중대 본 역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정보공개를 3판까지 내면서 개선해 나가는 상태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정보에 한하여 공개하고 있고 공개 시간이 지나면 공개 내용을 삭제해야 하고 성별, 연령, 국적 등 개인을 특정화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거주지도 읍면동은 내지 않도록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는 확진자별로 동선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개별 확진자별로 동선을 공개하면 특정되면 특정될수록 개인이 식별된 가능성이 너무 높아져요.

그래서 중앙에서 모아서 가능하다면 지자체에서 하지 않고 질본에서 하나로, 예를 들면 마 포구1번이라고 하면 범위가 너무 좁아지거든요.

질본에서 모아서 장소 목록, 그러니까 어디 장소 몇 시, 이런 상태로 목록형태로만 해서 데

이터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개발한 것처럼 통합 동선공개 시 스템을 만들어서 질본이 관리하고 각 담당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겠 죠.

이런 식으로 저희가 대안을 제시 드리는 거고요.

이런 대응 과정에서 전체적인 문제는 이게 권한 남용이나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감독 시스템이 없다.

어떤 정보를 국민에게 알려줘야 하는지, 그리고 누구의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는지, 어느 정도까지 공개되어야 하는지 등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 등 자의적인 판단에 맡겨진 상황이어서요.

이들은 당연히 방역이 너무나 중요하겠죠. 그런데 방역의 관점에서 보면 인권측면의 관점이 안 보일 수 있는 상태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중보건집행당국은 집행 효율성이나 공공의 필요성에 중심을 두고 할 수 있다면 사회적 측면이나 인권적 측면을 고려할 수 있는 감독기구가 꼭 필요하겠다.

공중보건집행, 외부에서 할 수 있는 곳도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있 잖아요.

보건위 전문가나 인권위 전문가나 감독을 1명 꾸려서 참여하는 방법도 있겠죠.

지금 코로나19는 감염병 위기상황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사회에서 구조적인 불평등이 더욱더 잘 드러나게 하는 그런 위기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감염병에 대한 대응에 너무 급급해서 그랬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피해자가 발생하고 계속해서 인권침해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이게 사실 마지막 감염병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쯤 종식될지는 모르지만 지금부터라도 명확한 기준이나 인권침해를 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 나가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발표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사회자 손재원: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UNDP에서 근무하면서 한국 코로나 대처 경험을 공유하는 웨비나를 자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개도국을 상대로 하다 보니 다루지 못했던 아래에 있는 인권문제에 대해서 기후활동가님께서 더 잘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깊어진 것 같습니다.

정확한 규정이 없는 점이 이태원 사건 관련하여서 말이 나온 만큼 비영리 공익 인권변호사 단체인 희망법에서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인권팀장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기고하신 성소수자 인권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 박한희 변호사님께서 발표 자료와 함께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한희: 박한희입니다. 희우 님 발표와 겹치는 것도 많아서 그것은 빼고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성소수자 관련해서 활동하고 있고 이태원 사건 봤을 때 성소수자 단체가 성소수자 커 뮤니티의 지자체와 소통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와 바탕해서 성소수자의 입장에 대한 문제점 부분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공개 범위가 갖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일반적으로 아까 일반적인 공개범

위의 문제점은 아까 희우 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인별 동선이 추적되고 성별, 연령, 주소가 나오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 5월에 이태원 클럽 사건 때는 특히 문제가 되었던 게 사실 이태원 클럽이, 사실 여기는 클럽이었고 꼭 성소수자로 전용으로 하는 클럽은 아니고 성소수자, 비성소수자가 사용하는 클럽이었는데 언론에서 게이클럽이라고 보도 헤드라인을 붙여서 넣으면서 클럽을 갖고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대해서 악의적인 보도가 나오거나 아예 이 클럽 자체가 게이들만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가 퍼지고.

온라인에서는 마치 어떤 데는 성소수자들이 일부러 대한민국을 망치려고 모여서 퍼뜨린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이태원에서 걸렸던 것은 그 자체로 일종의 성소수자라는 낙인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사실 성소수자에 대한 낙인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한국사회에서 성소수자가 자기의 어떤 성별 정체성을 주변에 알리는 것도 굉장히 큰 일이 됩니다.

이게 본인이 자발적으로 커밍아웃을 하면 모르겠지만 외부적으로 알려지는, 그것을 아웃팅이라고 하는데 아웃팅을 당하는 것은 성소수자인 게 알려지는 것만으로 배척을 당하거나 폭력이나 차별을 당하는 것.

실제 성소수자가 알려졌다는 이유로 가족한테 가정폭력을 당하거나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는 사례도 실제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성소수자한테 아웃팅은 더러운 일인데 이 클럽을 갔다는 이유로, 확진자가 되었다면 내가 자가격리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자가격리가 되면 당연히 회사나 가족이 알 수밖에 없고 왜 이 시점에 이 사람이 확진이 되었지? 자가격리가 되었지? 동선을 보면 이태원에 나갔네? 게이겠네? 성소수자겠네? 하는식으로 알려지게 되는 상황이죠.

일종의 언론의 보도와 지자체가 너무 상세하게 공개를 하는 문제가 다 섞였던 것이고요. 가장 크게 본 부분이 처음에 용인 66번 환자인데요.

용인 66번 환자가 이태원 게이클럽, 여기 기사에 나온 것이죠. 여기 클럽에 다녀온 확진자 인데 사실상 이분은 회사가 다 알려졌어요.

초반에 회사가 판교에 있는 몇 IT 기업 등 회사명이 다 공개가 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이분의 친구, 용인66번의 친구인 안양분이 있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회사 내 실명을 포함해서 관계도, 이 사람 실명이 뭐고 어디에 사는 누구인데 그 사람이 누가 감염을 시켰고 여자친구가 감염되었고 그런 관계도까지, 이게 지금은 내려가기는 했지만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어요.

보수 유튜브가 이 사람 실명을 공개하면서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고 있다고 비난 하는 상황이 되었고.

이게 처음부터 지자체나 당국이 철저하게 정보공개를 하고 개인이 특정되지 않은 방식으로 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했던 문제가 있고요.

사실 이것을 갖고 성소수자 대책본부를 결성해서 방역당국과 문제를 이야기했었는데 이때 답답했던 부분은 이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공개가 되는 것 자체의 문제점은 알겠다. 그런데 성소수자에게 더 문제가 된다는 것은 방역당국도 그게 왜 문제지? 계속 설명을 해도 그냥 어차피 알려지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겠는데, 그렇다고 성소수자만 특별 취급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성소수자 문제에서 더해야 한다고 했을 때도 성소수자를 특별취급을 할 수 없다. 모든 사람을 하지 않으면 어쩔수 없지만 이렇게는 못하겠다고 했는데 똑같은 공개문제, 똑같은 방역조치나 인권의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소수자 집단, 사회적인 낙인자 차별을 받는 집단에게 더 크게 다가오는 문

제발생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특별한 접근, 이것은 특별조치가 아니라 소수자가 가지고 있는 차별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들, 적극적인 차별시정조치로써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희우 님이 말씀하신 지침이 개정되었죠. 3판이 개정되었는데 3판지침은 여기 보시는 빨간색 표시한 대로 개인의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 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읍면동 단위는 공개하지 않는다.

직장명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시켰을 때만 하고 기본적으로 동선공개를 하지 않고 다 모아서 하게 되었는데 이게 용인, 제가 하면서 저번 주에 캡처한 건데 용인시 발생 현황, 너무심해서 가렸는데 진산마을 무슨 아파트라고 되어 있어요.

이분이 이웃사촌이면, 친구면 다 알죠.

누가 걸렸네? 이거 보고 이름 보고 누가 걸렸네 다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용인시만의 것은 아니고 여러 지자체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이게 사실 질본과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방역당국에서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에 한 계가 있다. 지자체가 강제할 수 있는 중앙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고 하는데 계속 이런 지침이 있어도 무시되는 상황이고.

아마 이게 지금 재확산이 다시 일어나고 있잖아요, 8.15부터.

이게 더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기사들 나오는 게 동선공개를 안 하는 게 답답하다는 게 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댓글 같은 게 왜 우리 지자체는 동선공개를 안 하냐, 옆 시도는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은 초창기부터 인권단체만이 아니라 전문가들, 감염병 전문가들 역시 이런 성별, 연령을 공개하는 게 굳이 개인의, 그러니까 방역을 위해서 도움이되는 정보가 아니라는 것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사실 주민들은 불안해할 수 있죠.

주민들은 내가 정보를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 불안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주민의 민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는 이게 방역에 도움 되지 않는 것이고 확진자에게 두려움을 줘서 숨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나아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지국 수사는 아까 길게 이야기해서 짧게 이야기할 텐데 이것은 법에 명확한 근거 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지국 수사가 법에 다른 것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사실 이렇게, 왜냐하면 기지국 수사가 어쨌든 헌법재판소 불합치가 되었고 개정된 법률에도 흉악범죄, 마지막 수단이거든요. 지금 헌법상 기지국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연쇄살인 등 흉악범죄고 다른 것은 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 하는 마지막 수사인데 지금 기지국 수사를 하는 것이고.

이태원 지역에서 했을 때는 전화번호만 수집한 게 아니라 이름과 연락처를 다 수집했어요. 왜냐하면 서울시가 이렇게 수집한 다음에 외국인한테 영어로 보냈거든요. 문자가 왔는데 한 국인한테는 한국어로 문자가 오고 외국인에게는 영어로 왔는데 구분할 수 있는 정보를 서울 시가 수집했다는 거죠.

단순히 전화번호를 수집한 게 아니라 이름부터 신상까지 수집해서 했다는 것이고.

그게 광화문 동선에 대해서도 기지국 수사를 지금 실시했잖아요.

비슷한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 사항에 대해서는 발표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손재원: 감사합니다. 현재 개인정보 정보공개 상황에 대해서 케이스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상세하게 알아봤던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형사사법에 대해서 개인정보에 대한 고찰, 클라우드 소고 등 법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계시는 조선대 법과대학 이원상 교수님께서 이에 대해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원상: 반갑습니다. 화상으로 뵙게 되었네요.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실 것 같은데, 저도 이 주제를 받고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우리 여기 있는 분들과는 밥 먹으면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개인정보가 침해된다는 것 또한 그런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한국 시민들이.

왜냐하면 우리는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것은 말하는 대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고 헌법에서는 정보자위결정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개인의 정보, 개인과 정보와 관련된 기본적인 부분을 규정해 놓고 있는데 재미있는 게 감염예방법이라는 게 적용이 되어서 기본적인 인권이나 이런 것이 침해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저는 제가 6월 말까지 독일에 있었기 때문에 독일과 한국을 비교하 게 되었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는 기본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규정해야 하기 때문에 독일 저희 제가 있었던 헨센주 같은 경우에는 2주 간격으로 법률을 만듭니다.

입법부에서는 법률을 만들게 되면 2주 동안 시행하고 2주 후에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서 개정안을 만들어서 유포하고 시민들이 지키는 방법으로 해서 기본권 침해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법률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법률을 가지고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의 기본적인 가치가 비례성 원칙이기 때문에 비례적으로 기본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게 기본적인 기관들은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비례성 원칙에 맞춰서 해야지, 아무리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하더라도 비례적이지 않은 집행에 대해서는 위법하다고 헌재에서 결정을 내렸거든요.

실제 독일에서 우리와 유사한 경우가 있었는데 독일에서 헌재에서 위헌결정을 내렸어요. 그런 식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이런 경우는 헌법적 가치에 위반된다고 해서 위헌결정이 났던 사례가 실제로 있었고.

또 하나, 기본적으로 이런 사안, 앞에 발제자께서 발제한 내용을 봤을 때 첫 번째는 법무부에서 그런 부분을 거칩니다. 법률로 만들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기본권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개인정보에 민감한 부분이나, 거기에서 한국으로 말하면 행안부겠죠.

행안부에서 법률을 만들고 법무에서 침해 판단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에서는 인권위에서 공고를 내면서 그래도 완화되기는 했는데 그 이전에 기본적으로 모든 장치들이 개인의 어떤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사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가지 장치를 통해서 침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원칙적으로예요.

그다음부터 어떤 정책을 펼쳐 나가는 그런 단계로 펼쳐지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쉽게 감염예방법, 이게 상위법도 아니고 이 법률은 법률 중에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처벌 규정 이나 이런 것을 봐도 굉장히 낮은 단계의 법률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기본권을 굉장히 쉽게 침해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고 활동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사안은 법률을 통해서 세세하게 규정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3월부터 이미 이런 것을 겪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긴급한 상황이 아닙니다.

물론 초반에 긴급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 행정명령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게 법률로써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부분이 우리 시민들 자체도 어떻게 되냐 하면 당신 죽겠습니까? 아니면 이대기본권 침해당하겠습니까? 하면 기본권 침해를 너무 쉽게 수용하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컨센서스를 가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동의한 것처럼 이렇게 이런 게 진행되어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정상화된 것이라고 할수 있겠죠.

또 문제가 되면 감염이라는 자체는, 그러니까 범죄가 아니거든요.

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범죄화 시켜서 취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성소수자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종교집단이라든지 어떤 소모임이라든지 어떠한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지고 마치 마녀사냥을 하듯이 "너희 왜 이렇게 안 했어?" 이렇게 잡아들어가기 시작하는.

즉, 원래대로 하면 감염을 예방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오히려 그런 사람에 대해서 말살을 시켜버리겠다는 희한한 정책으로 이어져 나가는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시민들 자체가 이 감염 예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그전에 우리가 헌법상으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본권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를 이해해야만 우리가 인식의 토대를 같이 하고 같이 대응해 나갈 수 있는데 어제도 그럴 수 있지만 행정명령으로 아주 간단하게 우리 기본권을 침해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제기를 안 해요.

왜? 하면 죽잖아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벌떼같이 인터넷에 공격당하죠.

이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권조차 제대로 실현도 못하고 침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침해를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기본권, 우리의 개인정보나 이런 것도 침해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당하려면 반드시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게 하나고.

두 번째,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 침해를 당하더라도 반드시 비례적으로 행사해야 해요.

행정기관은 지금처럼 막 하면 안 돼요.

만약에 기지국 수사를 하더라도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서 영장을 받아야 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제한절차가 있는데 마음대로 행정조사라는 이름으로 마음대로 행해지는 게 옳은 것이냐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가져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상황에서 개인정보를 일정 양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감염이 되었을 때 어느 정도 선에서는 공개를 했을 때 감염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과 여러 가지를 논의하면서 최대한으로 이 사람이 특정되지 않게끔 해서 아까 하는 노력들, 이제 조금씩 되는데요.

이미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앞으로도 계속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개인정보는 제가 동의하는 순간에 무한권력을 갖습니다. 정부에서 당신 개인정보 쓰겠습니다. 제가 동의하는 순간 이 정보는 어떻게 쓰일지 몰라요, 저에 대한 통제권을 상 실하게 되거든요. 즉, 개인이 동의했다는 하나로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이 동의했더라도 정보는 비례적으로 사용되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런 것은 우리한테 조금 더 우리 시민들이 기본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그다음에 우리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되게 많이.

하다못해 형사소송에서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나 죄 지었습니다" 하고 말을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감염병 예방법에서는 제가 어디 갔다고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더 가혹하게 그 사람을 죽여 버릴 정도로 가혹하잖아요.

이런 관행이 옳은 것이냐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요약하면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정부 시책이나 정책에 대해서 협조하고 마스크 쓰고 개인정 보를 일정 부분 공개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하더라도 모든 근거는 가급적이면 감염병 예방 법이 아닌 다른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고.

행해지더라도 반드시 이것을 행하는 기관들은 이 사람의 인권침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행정편의적인 사고가 아니고 노력해서 이것을 가지고 대응해야지만 우리 시민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적절하게 코로나 사태를 대응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두서없이 말한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손재원: 감사합니다. 한국의 상황을 독일의 사례와 함께 설명해 주신 것 덕분에 이해가 깊어진 것 같은데요.

저희 다른 제안자 중 법학 전공자이진 이재영 님께서 교수님에 대해 코멘트가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영: 들리나요? 방금 소개 받은 이재영이라고 합니다.

방금 교수님 발표하신 것 잘 들으면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 정리겸 첨언겸 교수님의 발표에 대한 질문이 조금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기본권을 제안할 때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서 얻게 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의 적절한 비교를 통해서 그것을 판단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 제가 대략 다른 판례들을 참고해서 침해되는 사익과 얻게 되는 공익을 어떤 식으로 용어정리를 해서 비교해야 될까 해서 조금 정리해 봤는데요.

먼저 침해행위로 달성되는 이익의 내용과 준배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또한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 침해 발생의 상당성, 피해 이익과 중대성, 정보비교를 해서 이런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 얻게 되는 공익이 법으로 판가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19 사태로 해서 정보공개를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이 대략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 봤는데 먼저 얻게 되는 공익에 관해서는 노출자를 신속하게 일반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다는 점과 또한 정보공개를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시민들에게 조기예방적인 측면으로 권고를 내릴 수 있고.

또한 그 지역에서 지역감염의 확산 차단 같은 것을 얻게 되는 공익이라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

침해되는 사익으로는 낙인효과, 아까 다른 활동가님,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낙인효과나 지역에 있는 상권들이 영업적인 측면이 조금 저하가 된다는 점.

또한 잊혀질 권리 같은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들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

또한 개인정보식별가능성 같은 게 확진자가 조금 더 늘어나면서 올라갈 수 있다는 점.

또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가 되었는데 이런 게 침해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대법원 판결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도 헌법 37조 2항에 따라 제한 과 한계가 존재한다고 되어서 대법원 입장으로는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얻게 되는 공익이 더욱 우월한 것이라고 표현해서 얻게 되는 공익이 더욱 우월해야 된다고 대법원은 판시한 적이 있는데요.

과연 이렇게 제가 아까 나열해 드렸던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같은 게 물론 더 있을 수는 있겠지만 과연 이런 것이 대법원이 판시한 것처럼 얻게 되는 공익이 더욱 우월해서 지금 실시되고 있는 것인지 학생 입장으로 먼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행정규칙이나 행정명령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질병관리본부라든지 방역대책본부에서 가이드라인이나 지침 같은 것으로 지자체마다 정보공개에 대한 방법이라 든지 정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놨는데 과연 이렇게 14일 내에 예를 들어서 확진자 정보를 14일 내에 삭제를 해야 한다는 규정 같은 것이 행정명령으로 해서 행정기관에서는 사용될 수 있지만 일반 SNS 이용자라든지 웹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그런 정보를 올렸을 때에 대한 대책이나 현재 사이버 방역이나 사이버수사...

인터넷에서 그러한 정보들을 삭제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자정적으로 삭제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런 가이드라인이나 행정명령 등으로 인해서 14일 내에 삭제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 유저들한테까지 적용이 된다면 그것은 유보성의 원칙에 의해서 행정명령이 직접적으로 가해져서 사람들이 삭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현재 현행법으로 그런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일반 정보들 같은 것이삭제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딜레이에 있어서 정책을 새로 정해야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교수님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상: 아주 예리한 질문을 해 주셨네요. 첫 번째는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렸던 원칙과 비례성 원칙 등 중요한 것은 비례성 원칙, 하위성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비례성 원칙은 원칙에 대한 원칙이 작용합니다.

뭐냐? 즉, 두 가지 원칙이 부딪히게 되면 절대 하나의 원칙이 절대적으로 적용되고 다른 원칙이 배제되지는 않거든요.

그랬을 때 두 가지 원칙이 부딪히면서 이 원칙을 어떻게 조화롭게 적용할 것이냐 하는 게 대표적인 비례성 원칙.

원칙이라는 게 기본적 원칙이라는 게 자유권과 평등권이 부딪히면 자유권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평등권을 배제해 버리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잘 조화롭게 어떻게 원칙을 할까 하는 게 입법에서는 비례성 원칙 인데.

중요한 게 타인의 이익과 공익을 비례성 원칙 가지고 비교하게 되었을 때 보면 독일의 판례나 이런 것들, 우리가 독일의 판례를 많이 보니까 독일의 현재 결정 등을 보면 공익보다는 사익 쪽으로 더 비중을 두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 소리는 뭐냐 하면 어떤 사항에 대해서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과 우리 공공의 이익 이 더 이득을 보는 것과 2개가 부딪히게 되면 그 균형점을 어디에서 잡을까라고 했을 때 독일은 봤을 때 개인 쪽으로 잡는 것 같아요.

개인 쪽이 더 사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게 되는데 한국은 희한하게 독일과 되게 비슷함에 도 불구하고 공익 쪽에 초점을 더 많이 맞추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쉽게 말해서 네가 조금 손해 보더라도 우리가 다 같이 괜찮아지면, 이런 관점을 취합니다.

방금 말했던 이번 원칙 같은 경우에도 사익이 침해되는 것보다 공익적인 가치를 더 우수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공익적으로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정보를 침해가 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하게 되는데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감염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 쓰는 말이 근절이라는 말을 쓰는데 근절은 뿌리째 뽑을 수 없어요.

백신도 개발이 안 되는데 어떻게 뿌리째 뽑아내요?

제어하면서 결국에는 나가야 되는 방법에는 어떻게 코로나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으면서도 이겨내고 가야 되는지, 앞에 즉, 초기에는 우리의 개인적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을 용인할 수가 있어요.

왜? 갑자기 사태가 발생하다 보니까 모든 시스템이 아직 정비가 안 되었어요.

그럴 때는 인정이 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만연화 된다는 게 보이고 어느 정도 기간도 있었는데 아직까지 공익적인 우위를 내걸면서 사적인 기본권 침해, 그 가운데에서 개인 침해를 인정해 주고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사익적 침해에 대한 보호 쪽으로 우리가 균형점을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쪽으로 가라는 것은 아니죠.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핵심이 뭐였죠? (웃음)

-이재영: 현재 감염 확진자 정보공개가 되고 나서 14일 내 삭제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이 나 지침 같은 것.

-이원상: 오케이, 생각났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정보는 인터넷으로 공개되는 순간 절대 정보는 안 지워집니다. 국가가 가진 정보든 개인이 가진 정보든 상관없어요. 인터넷에 올라가는 순간에 그 정보는 안 지워 집니다.

요즘에 가장 각광받는 직업 중 하나가 소위 말해서 인터넷 장례업체라는 게 있잖아요. 이분들이 열심히 지운다고 하더라도 100% 지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소리는 뭐냐 하면 일단 정보가 올라가게 되면 누군가 퍼나르든지 우리 로봇들이 그것을 열심히 가지고 가겠죠. 여기저기 서칭을 하면서. 그렇게 되면 그 정보는 인터넷 사이버 공 간에 절대 지워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수집한 개인정보가 지금은 정보 서버 어디에 있다 14일 지나면 지워지겠죠. 그런 시스템인데 문제는 이게 공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동선, 조금 전에 봤던 8월 16일 그분, 우리 변호사님께서 공개한 그분은 죽을 때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것.

내가 코로나에 걸렸다는 사실은 죽을 때까지 못 지워요. 왜? 벌써 인터넷에 떴거든요. 그렇

게 되는 순간 못 지워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행정명령으로 다 지우세요, 못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헌법에서 정보권은 내가 정보를 액세스할 수 있지만 내가 가진 정보는 그럴 수 있는데 정부가 해라, 마라 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건데 정부가 행정권으로 한다? 법률만 만들어서 한다? 이것은 새로운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개인정보 수집을 적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저도 요즘에 계속 봤거든요. 저희 동네에 누가 되었다고.

그것을 받은 다음에 반응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 되었으니까 가면 안 되겠다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다는 거죠. 그 소리는 뭐냐하면 이 정보가 공개됨으로 인해서 이분, 아까 용인 16일의 그분은 죽을 때까지 이분은 주변에서 욕을 먹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그런 것, 내가 잘못해서 걸리지 않았지만 잘못해서 걸린 것처럼 되니까.

그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받는 피해보다 내가 보는 편익, 내가 그것을 보면서 여기 안 갔으니 괜찮네 하는 편익. 2개를 봤을 때 어떤 게 더 크냐는 거죠.

그랬을 때 아까 말했던 정부기관에서는 정보가 있으면 알아서 거기에 대해서 조심하고 방역 조치하면 충분히 되고.

그다음에 우리 동네에 있는 이런 게 발생하면 조심하십시오 하면 되는 문제를 가지고 구태여 누구라고 집어서 말해서 그 사람을 나쁜 놈이다! 이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할 수도 없고 행정명령으로 지워내라고 할 수도 없고 법률로 만들어서 지우라고 할 수는 있다는 것이죠.

결국 정보는 적게 모으고 적게 공개하는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회자 손재원: 재영 님의 날카로운 질문과 교수님의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변호사님, 활동가님, 패널 분들 중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은비 님.

-고은비: 방금 말씀해 주신 게 한국이 소통이 강한 사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은데요.

안 들리시나요?

그에 대한 가치 인식도 필요할 것 같고, 또 관리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에 덧붙여서 성소수자 등 다른 정보공개가 치명적일 수 있는 부분에서 인권강화가 강화되어야 하며 이런 부분에서 유연한 정책 적용이 필요할 것도 같아요.

들리나요?

물론 우선적으로 정보공개가 개인식별이 안 되어야 되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 어떤 기준으로 사람들을 규정하는지 저는 박한희 변호사님께도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코로나 사태에서 정보공개와 동선공개 의도는 그 곳을 이후에 가지 말라는 의도보다는 그곳에 그때 그 시간에 있었던 사람이 신고하고 검사를 받으라는 의도가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목적 상황에서 어떠한 정도로 지금 많이 과도화 되었는지 지금 계속 그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목적에 대해서도 조금 더 나누고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박한희: 질문과 이야기를 보충해서 이야기 드리면 일단 정보를 이렇게 왜 코로나 때 공개하느냐 하면 메르스 때 너무 공개를 안 해서 오히려 메르스 때는 정보공개가 안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원내 감염이 확산되면서 정부의 어떤 방역조치에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개를 하는 것 같 은데요.

또 그게 너무 과도하게 공개되고.

사실 최근에 일본 기자들을 만날 일이 있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일본은 아예 공개를 안 한다고 해요.

NH 등 공식 언론을 통한 것 말고는 아무 정보를 얻을 수 없어서 시민들이 깜깜이 되고 있는 상황, 일본은 확진자가 폭주하면서 어디를 피해야 되는지, 어디가 안전한지 상황을 알수 없는데 이것은 극단이겠죠.

정부가 그렇게 해도 안 되고, 모든 것을 공개해서 개인의 사생활을 공개해서도 안 되고 균형점을 잡아야 될 것인데 균형점에서 개인의 사생활, 개인의 인권의 침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고.

또 이게 방역에 도움 되는지 안 되는지는 과학적인 논지나 전문성에 대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는 정보의 수집과 공개는 다른 거거든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서 수집할 수도 있어요. 성별을 수집할 수 있거든요. 실제 UN 기구들에서도 성별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라고 하거든요. 여성, 젠더에 대한 영역 을 봐야 되니까. 젠더에 대한 차등이 일어났는지 여성이 피해 받는 상황이 없는지.

특히 노인 여성들이 젊은 여성들보다 피해를 더 많이 받는 게 있을 것이고, 그래서 성별이나 연령을 수집하라는 것은 있는데 이게 공개해야 되는가.

우리 동네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30대 여성인지 20대 남성인지, 내가 어디를 가고 어디를 조심해야 되는지를 이런 것이 초반부터 문제가 되었던 부분인데.

그래서 처음부터 공개 방식을 이야기했더라는 것은 지금 지침 3판과 똑같습니다. 결국 개인을 추적하지 말고 개인이 어떤 성별, 연령, 주소를 다 드러내서 개인을 아침에 나올 때부터, 사실 지금 정보공개 방식을 보면 사람들이 아침에 나와서 무엇을 하고 어디 가게를 들렀고 뭘 했는지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면 이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거든요.

인터넷에 보면 착한 확진자, 나쁜 확진자.

착한 확진자는 집-편의점 여기만 왔다 갔다 해서 착한 거예요.

그런데 회사도 가고 공원도 가고 쇼핑몰도 간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돌아다니냐. 그러면 그것은 어떤 사람에 대해 도덕적인 평가를 하게 되는데 불필요하잖아요.

방역과 상관이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은 지금 제가 카페에 있지만 이 카페에 러시아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면 공개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남성인지 여성인지 성별, 연령은 알 필요 없죠.

그래서 그런 것과 필요한 것, 수집해야 될 것, 공개해야 될 게 명확히 필요가 있고 그게 합 리적인, 특히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인데 그게 초창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놓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오히려 재확산이 되면서 그나마 있던 원칙도 무너지지 않을까 싶은 상황입니다.

-사회자 손재원: 희우 님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우: 목적성에 관해 이야기를 하셔서 첨언하자면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감염병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감염병 자체에 대한 과학적 정보나 진행 상황이나 정부 대책 등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공개하는 건데, 이 정보가 사실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염법 6조에 어느 정도 공개해야 되느냐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확진자를 파악한 경우에는 동선공개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잠재적 접촉자가 자신이 이미 알았고 누구를 접촉했는지 안 상황에 대해서는 동선 공개를 할 필요가 없는데 이게 법에서는 국민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알아야 하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투명성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확진자 동선공개를 하면서 잠재적인 접촉자를 위해서인 것인지 둘 다 포함하는 것인지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목적에 따라 정보공개 범위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도한 부분에서 어떤 목적인지 투명성이나 알 권리를 위해서인지 접촉자 파악을 위해서인지 별도로 규정을 마련해야 과도 한 정보공개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지자체별로 동선공개 기준이 다른 것 때문에 저희가 모임을 한번 가졌는데 서울시 담당관과 저희 인권단체가 모임을 가졌는데 거기에서 설명을 드렸을 때 질본에서는 일단 보건소에서 역학조사관이 정보취합을 해서 질본에넘기고 질본이 지자체에 보내주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여기에서 지자체에서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담당자들이 따로 있고 이 담당자들이 동선공개를 했을 때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성별이나 국적, 연령을 공개한다는 이야기를 드린적이 있어요.

그 담당자들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성별이나 연령, 국적을 공개하는 게 방역에 도움 된다고 판단했을 때 그것을 공개한다는 이야기예요.

결론적으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정보공개 관련 안내 지침이 있지만 지침일 뿐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규정이 꼭 따라야 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장에서 정신도 없고 담당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렇게 되었을 때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공개가 된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사회자 손재원: 희우 님, 발언하신 김에 3쟁점, 정보공개대상자를 위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인권보호 조치가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우: 이미 공개된 사람들일까요? 앞으로 공개될 사람들?

-사회자 손재원: 이미 공개된 사람들.

-희우: KISA가 나서서 동선공개 지침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개인정보는 한 줄의 글자라도 어마어마하게 삭제하는 게 힘들 수 있어요. 성격에 따라서는 불가능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동선공개에 의해 피해를 본 사람들은 지우고 있고 삭제를 열심히 하겠지만 사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분들에 대해서.

내가 직장이 공개되고 사는 곳이 공개돼서 특정된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그래서 저는 이 확진자에 대한 애도나 위로의 분위기가 확산되는 게 오히려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정보공개, 그러니까 동선공개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그들을 비난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들을 비난하지 않고 환자, 아픈 사람이고 피해자로서 우리가 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 외에는 사실상 그들을 구제할 방법은 없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무분별한 정보공개 때문에 그런 사람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 정도가 우리가 열심히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회자 손재원: 현실적인 방법인 것 같고, 이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하셔서 앞으로 공개될 분들에게는 침해가 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변호사님께서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한희: 사실 개인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가 쉽지는 않죠. 이게 그런 기사 같은 데 떴더니 기사에 대해서 정정보도나 하는 부분이 있다면 할 수 있을 텐데 성소수자 대책본부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감염이 여러 가지 기사를 통해서 감염사실 같은 것도 될 것 같고.

또 이것에 대해서 정정보도 청구를 해서 진행 중인데 이미 기사가 올라간 상황에서 스크랩해서 자기 블로그에 올리고 퍼뜨린 것에 대해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어떤 플랫폼이 있다면 플랫폼에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은 있고 다른 것은 아까용인이나 안양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구글에 요청해서 구글에서 유튜브를 차단시켰거든요.

그런 것은 할 수 있겠지만 개인이 계속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고, 저도 사실 이게 지금 하나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용인, 아까 봤던 용인 분에 대해서 나무위키, 위키 사이트에 직장명이 있거든요.

나무위키 사이트에 보면 직장명이 있어서 용인시가 인터넷방역단이라고 인터넷에 올라간 것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게 있어서 하나 신고를 넣어놓은 상태인데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3주 전에 했는데 아직도 처리 중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 번 퍼지면 돌이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법적으로 너무 대처하기 힘든 부분이 있고.

정말 희우 님 말씀대로 예전에 성범죄가 났을 때 피해자에 대한 지나친 정보가 있을 때 해 시태그 운동도 있었잖아요. 해시태그 운동, SNS 운동을 했는데 그런 것을 하거나 우리는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알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방역에 관한 정보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약간 법 관련해서 하나만 이야기를 드리면 이게 감염병 예방법 상에 정보공개 관련해서 내용입니다.

정보공개 관련해서 이렇게 다 있는 것이고, 정보공개가 되게 많아요.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다입니다. 이 정도만 조합하면 개인의 모든 인생을 지금 현재 사회에서는 다 파악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어디 군에서는 광화문 참여자 GPS 추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봤거든요.

휴대폰 GPS 추적을 하면 아침부터 낮까지의 인생이 다 보이는 거죠.

그런 정보가 수집되고 있는 것이고, 2번 같은 경우가 기지국 수사거든요.

정보통신사업법에 따라서 사실 명확하지 않은데, 기지국 수사라는 게 명확하지 않은데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에서 기지국 수사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3번이 질병관리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의료기관, 보건의료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문제점은 6항인데요.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업무 종료 시 파기하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3항에 따라서 중앙행정관리장, 지방자치단체장, 보험공단 이사장 등은 파기해야 돼요.

질병관리청장이나 이런 사람이 수집해서 제공하는 건데 수집한 사람은 파기하는 의무가 없 어요

계속 갖고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메르스 정보가, 2018년 정보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게 법에 따라서 언제까지 파기하고 어디까지 보관하고 이런 게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계속 수집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법 관련해서 최소화 어쨌든 파기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보관 기관은 언제를 초과할 수 없고 업무가 끝나면 바로 파기해야 된다, 감독기관. 파기되었으면 그 파기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정보가 남아있는지 감독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감염병예방법이 그런 식으로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자 손재원: 감사합니다. 혹시 은비 님, 지금 스피커 괜찮아지셨으면 지금까지 법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정치외교를 한 입장이다 보니 까 의견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은비: 들리나요? 아까 말했던 것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조금 안 들리신 부분이 있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다 그래도 전달이 되었었나요?

박한희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법률적인 사항도 저는 굉장히 동감을 하고 필요한 부분을 되게 많이 느끼지만 저는 또 아까 이원상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기본권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감시해야 된다는 감시와 의심이 꼭 필요하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에코가 들리는데 혹시 저만 들리는 건가요?

괜찮으세요? 들립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신이 없네요. 아무튼!

조금 더 거기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지금 약간 헷갈려서 잠시 다른 분한테 넘기고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원상: 이것과 관련해서 첨언 드리면, 제가 독일 이야기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독일빠이런 사람은 아니고요.

제가 독일에 있을 때 똑같이 위치추적이 한국 모델이 그대로 독일에 소개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위치추적 모델을 도입해야 된다는 게 독일 내무부에서 있어서 만들어놓고 한국과 같은 위치추적 시스템을 독일에 도입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법무에서 제동이 걸렸어요.

기본권 침해가 너무 심하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독일은 굉장히 재미있는 구조가 법무부 밑에 사법부가 들어가 있어요.

법원이 법무부 밑에 들어가 있는데 독일에서 재미있는 것은 인권침해적인 것을 만들면 법무 부에서 반대하는 게 많은데 그게 이번 위치추적이었습니다.

결국 독일에서 위치추적 들어가는 것이 금지가 되었어요. 다만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왔는 나. 자기가 원하는, 동의하는 사람만 위치추적 앱을 깔아서 그 사람들끼리만 공유해라, 이렇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위치추적앱을 깔아서 걸린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면 서로 위치추적을 해서 공유할 수 있게 한 거죠.

실제 20% 정도가 깔아서 실질 적으로 도움은 안 되었어요.

도움은 안 되었는데 거꾸로 말하면 위치추적앱이 들어오는 것은 막았는데 독일이 지금보다 덜 창궐하고 이게 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독일은 위치추적이 안 들어오거나 선별적으로 들어오면서 균형적인 점을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아까 제도가 맞다고 해서 목적 이야기 했는데 목적은 좋죠. 나쁜 것은 없어요. 하지만 수단이 목적에 비례적이어야 하죠. 균형적이고 합당해야 하는데 우리는 넘어서는 것 을 목적만 정당하다고 하면 다 넘어요.

기본권을 침해하면서 그냥 인정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즉,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게 막지 않으면 정보가 공개되는 순간에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을 계속해서 잘못된 정보로 평생 살아남아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독일의 예를 보면 독일에는 그런 부분이 미리 검토가 되고 실시하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사회자 손재원: 재영 님, 발언해 주세요.

-이재영: 교수님 말씀에 또 첨언을 하나 더 하자면 교수님께서 독일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알려드리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해서 판결을 내렸을 때 했던 말 중 하나가 아까 제가 대법원에서는 공익과 사익이 충돌될 때는 더욱 월한 것에 따라서 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인 공공의 이익이 있어야지만 그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기본권 침해 같은 것들이 인정이 될 수 있다고 판시를 했고.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는 더욱 우월한 것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독일은 공공의 이익이 사익보다 압도적으로 높아야지만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라고 봤고요.

그런 측면에서 다시 쟁점 3번 내용으로 돌아와서 우리나라 정부 같은 경우에는 행정명령이나 가이드 명령 같은 것으로 계속 3판을 내면서 그것에 대해서 변화에 적응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행정적인 명령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아니면 행정 관례 같은 것을 바꿔서 국민들에게 정책이나 다이렉트로 올 수 있는 행정적인 변화 같은 것들뿐만 아니라 독일 같은 경우에서는 공공의 이익보다 사익을 조금 더 우선시하는 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도 정보공개같은 것들을 하는 게 어떠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고 어떠한 인권문제를 발생시키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득하는 과정 같은 것은 전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른 지자체가 정보공개가 다 다르고 한데 어떤 카페나 댓글 같은 것을 보면 아, 옆 동네는 이런 확진자 정보나 더 자세히 나타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정보를 안 나타내서 민원을 넣을 것이라 해서 공무원과 싸움이 붙었다, 그로 인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겠다는 댓글이 달리는 것을 찾아봤습니다.

그런 것을 보다 보니까 정부나 지자체 측에서 그러한 인권적인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설득하는 과정이 없고 행정적인 정책적인 것만 하다 보니까 국민들과의 괴리나인권 보호적인 측면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러한 설명의 장이라든지 아니면 정부나 지자체 주관으로 해서 시민들과 국민들이 기본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보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자 손재원: 이에 대해서 발언하고 싶은 패널 분이 있으실까요?

없으시다면 지금 질문 사항이 들어와서 이에 대해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 질문인데, 아까 교수님께서 공익, 사익, 조화 추구 과정에서 이를 바라보는 문화 차이가 국가마다 존재한다고 말씀해 주신 발언에 대해서 참석자 분이 코로나19가 범지구적 재난사태다 보니 이에 대해 대응하는 데 정보공개 국제성에 대해서 있는 차이로 인해서 국 가별로 코로나 예방 차이도 크다고 생각하십니다.

이것이 정부의 능력차이인지 공익 및 사익을 바라보는 문화 차이인지 어떤 것으로 바라보는 게 더 알맞다고 생각하는지 교수님의 의견을 여쭤 보셨습니다.

-이원상: 누가 저렇게 이야기하셨는지는 알려주시죠.

저게 사실 이 코로나 예방에 대해서 정부가 능력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을 지금 상황에서는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이것을 옛날에 무슨 스페인 독감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 이후로도 100년 만에 겪게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정보, 우리가 많이 비교하는 정부 중 하나가 스웨덴 정부거든요. 거기에서는 집단감염을 통해서 우리가 이겨냈다고 주장을 했잖아요.

그게 과연 잘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처럼 이게 잘하는 것인지. 한국, 뉴질랜드, 호주 이런데 많이 하죠.

어떤 데가 능력이 있고 없고는 사실 말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것은 나중에 코로나 사태가 다 끝나고 나서 최후적으로 검토하면서 평가할 수 있는 요소 지, 지금 알 수 있는 요소는 아닌 것 같은데, 다만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 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 상황에서의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것이 시민들의 기본권이나 이런 것을 덜 침해적으로 대응하는지, 아니면 굉장히 침해적으로 대응하는지 극단적인 나라 가 있잖아요.

여기 중국 분 계시나요? 들어오시나요? 안 들어오시죠? 중국이 굉장히 극단적인 사례로 볼 수 있잖아요.

중국처럼 완전히 기본권이고 뭐고 상관없이 깔아뭉개놓고 가는 게 맞는 거였냐. 아니면 오히려 더 반대로 스웨덴처럼 자의적으로 인정하면서 가는 게 맞는 것이었느냐.

아니면 독일이나 우리나라처럼 중간에서 어느 정도 균형점을 갖고 가는 게 맞는 것이냐. 정답은 없지만 적어도 이 상황에서는 뭐냐 하면 공익, 기본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거든요. 우리가 생명만 살고 있다고 해서 살아있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자유권이나 평등권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가 침해된 상태에서 우리를 새장 속에 가둬놓고 너는 코로나에 감염 안 되니까 열심히 살아! 괜찮아. 이렇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사태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익과 공익을 가지고 기본권 침해, 침해 정도를 가지고 균형점을 어디에 맞추면서 나아가야 될 것이다, 이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부권은 개인의 기본권을 좀 더 중점을 가지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더 창궐한 게 있다 하더라도 기본권적인 제약 측면에서는 나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락다운 당해서 봐봐라, 사먹지 못했잖아.

제가 독일에 있을 때 락다운을 당했는데 사먹고 산책 다니는 게 지장이 없었거든요. 우리 언론에 비친 것처럼 우리처럼 심하게 락다운 된 게 아니고, 우리는 한국은 문제가 되는 게 K-방역 잘했다고 홍보를 하는데 유럽에서 많이 소개되지 않은 비판 중에서도 한국의 어떤 그런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굉장히 심하다. 중국과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프랑스의 여 변호사인가요? 이분이 말했던 것은 일부고 그것 말고 대다수, 7:3이면 7 정도되는 유럽의 사람들은 한국의 정책에 대해서 퀘스천을 가졌다는 거죠.

왜? 기본권 침해가 그만큼 되었으니까.

그래서 국가의 능력이나 지금 상황에서는 코로나를 이겨나가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기본권 침해를 덜하면서 이것을 슬기롭게 이겨가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지, 맞고 틀리고를 따지는 것은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답이 되었나 모르겠네요.

-사회자 손재원: 답이 되었을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질문이 있으면 Q&A에 남겨주시는 대로 다시 패널 분들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변호사님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박한희: 말씀드린 대로 국가의 대응이 어떤지 코로나 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우리도다 끝난 줄 알았지만 지금 다시 시작되는 상황이라 어떤 게 맞는지 알 수 없기는 한데 이번에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 어떤 원칙이 지켜져야 되는지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코로나가 아니라 HIV, 에이즈의 경험에서 많은 감염병 대응 방식의 인권원칙이 만들어졌거든요.

HIV가 1990년대 대유행이 된 이후로 그 상황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 전 지구적으로 어떻게 대응했는지, 국제기구도 있는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인권을 무시하는 방역 체계가 방역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은 확실하거든요.

감염을 낙인찍고 환자를 낙인찍고 접촉 시키는 것을 악마화 시키고 그 사람을 격리시키고 사회적으로 쫓아내는 방식으로는 결국 사람들은 숨어버리거든요.

그랬을 때 그 결과는 내가 감염되었다고 생각하면 검사를 안 받아요.

숨어버리지. 그러면 오히려 전파가 되고. 그래서 HIV에서 최소한의 인권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방역은 될 수 없다. 방역은 인권과 대립되는 거고, 방역하려면 인권을 지키지 못한다. 인권을 지키면 방역이 실패한다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을 막는 게 결국에는 필요한 것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HIV와 바이러스 성격은 다를지 몰라도 기본적인 원칙 속에서 세 부적인 것을 찾아나가는 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사회자 손재원: 감사합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첨언하고 싶으신 다른 패널 분들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질문 사항이 없는 관계로 혹시 오늘 세션을 마무리하기 전에 패널 분들께서 마무리로 오늘 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나 오늘 참석하신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이런 게 있으시 면 듣고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혹시 발언하실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주십시오.

없는 것으로 알고 오늘 KrIGF 워크숍 6번이 이재영, 고은비, 이지원 제안자님이 좋은 주제로 제안해 주셔서 작년 KrIGF 세션이 만들어진 이후에 잘 이루어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싶고,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주저하실 수도 있는데 연사 초청을 흔쾌히 수락해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신 오늘 패널 분들 덕분에 더욱 뜻깊은 세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끝까지 참석해 주신 참석자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세션은 이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